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82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26. 3. 12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」	장정희 위원외 9명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제안자 : 장정희 의원 외 9명
- 제안일 : 2026. 2. 27.(금)
- 회부일 : 2026. 3. 5.(목) (의안번호 : 26-27)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(안 제6조 및 제7조)
- 세부 설치표준안(안 제8조)
- 공사현장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및 제10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-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○ 입법예고: 2026. 2. 24. ~ 2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 내용

○ 제1조 (목적)

- 마포구 보도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○ 제2조 (정의)

- 보도와 점자블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.

○ 제3조 (적용범위)

- 마포구 관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전체에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.

○ 제4조 (구청장의 책무)

- 구청장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.

○ 제5조 (기본계획 수립)

-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, 필요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.

○ 제6조 (실태조사)

-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며,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.

○ 제7조 (현황관리)

- 점자블록 설치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함.

○ 제8조 (세부 설치표준안)

- 점자블록 설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세부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, 서울시 지침을 준용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.

○ 제9조 (공사현장 관리)

- 도로 공사 시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.

○ 제10조 (협력체계 구축)

-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.

③ 개정내용 검토

○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및 개선 필요성

- 보건복지부의 '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 조사' 결과에 따르면,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79.2%인 것에 비해 '시각장애인 관련 편의 시설' 적정 설치율은 일부 항목에서

50% 미만(점자블록 45.7%,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25.8%, 내부 출입문 점자표지판 21.8%)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임.

<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결과: 전체 현황 >

(단위 : 개, %, %p)

대상 건물	기준 항목	설치	설치율	적정설치	적정설치율	설치-적정 차이
190,991	6,440,413	5,743,896	89.2%	5,099,250	79.2%	10.0%p

○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요구

- ‘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’(국토교통부) 결과, 시각장애인 응답자의 60.1%가 ‘보행환경’ 특히 보도(인도)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이동편의 환경으로 지목한 바 있음.

○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문제점

- ‘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 조사’(보건복지부)에 따르면, 점자블록은 전체 설치기준 항목 수는 76,557개소로, 설치율은 51.0%, 적정설치율 45.7%로 전반적으로 설치율과 적정성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.
- 또한, ‘2023년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 조사’[(사)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]에 따르면, 점자블록은 조사 대상 지수 7,019개 중 적정설치율이 4.0%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, 부적정 설치율은 77.3%, 미설치율은 18.7%로 나타남.

○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의 취지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 현재 보도 점자블록은 설치 기준은 존재하나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, 점자블록 위 불법 시설물 설치, 공사 후 점자블록 미복구, 방향 오류 및 단절된 점자블록, 보도포장 교체 시 점자블록 훼손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본 조례는 점자블록의 설치·정비·관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○ 기대효과

-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 확보
-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
- 점자블록 관리의 체계화
- 공사 과정에서의 관리 강화
- 민관 협력 기반 구축

○ 조례안의 보완 필요사항

- 점자블록 설치 및 정비 사업은 보도 정비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, 지속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함.
- 현재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및 관련 지침에서도 점자블록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이 일부 중복될 수 있음.
- 보도 관리 부서와 도로 공사 부서 간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점자블록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.
- 조례에서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점자블록 훼손 및 변경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점검 체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.

4] 타 자치구 조례 현황

○ 서울시 10개 자치구 조례 제정·운영

구분	조례명	시행	
1	강서	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5. 11. 12.
2	관악	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5. 12. 30.
3	구로	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5. 11. 20.
4	금천	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5. 7. 24.
5	노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5. 5. 16.
6	성북	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5. 9. 25.
7	양천	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5. 3. 13.
8	용산	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4. 9. 27.
9	종로	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5. 7. 4.
10	중랑	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	2025. 1. 9.

※ 법제처, 국가법령정보센터(2026. 3. 5. 검색)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점자블록 정비 예산 확보, 관리 책임 부서 명확화, 실태조사 및 점검체계 강화 등에 대한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이동편의시설”이란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步道),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별표 1]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(제5조제2항 관련)

11. 점자블록

- 가.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하여야 할 위치나 안내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
- 나. 점자블록의 색상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되,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.
- 다. 점형블록은 횡단지점, 대기지점, 목적지점,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,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거나, 선형블록이 시작·교차·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설치한다.
- 라. 선형블록은 보행동선의 분기점, 대기지점, 횡단지점 등에 설치된 점형블록과 연결하여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, 보도에 연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·유지하는 용도로 설치한다.

[별표 3]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(제5조의2제2항 관련)

마. 장애인 안전시설

- 1)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경로를 안내하기 위하여 바닥에 적절한 폭과 요철을 갖춘 경계면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.
- 2)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자블록의 시설 기준은 별표 1 제1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19.>

- 1. “장애인등”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“편의시설”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,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5. 1. 28.]

제8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편의시설의 종류)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9. 19.>

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(제4조관련)

1. 삭제 <2006.1.19>

2. 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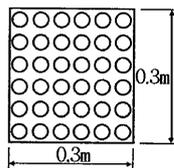
편의시설의 종류	설치 기준
가.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	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·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나.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	공원시설(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)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·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다.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	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,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,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,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라. 점자블록	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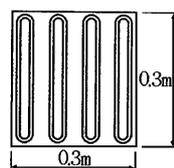
6. 점자블록

가. 규격 및 색상

- (1)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점자블록의 크기는 0.3미터×0.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,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.
- (3)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.
- (4)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·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, 돌출점의 높이는 0.6 ± 0.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.
- (5)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.
- (6)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, 돌출선의 높이는 0.5 ± 0.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.
- (7)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,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.



점형블록



선형블록

- (8)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,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나. 설치방법

- (1) 점형블록은 계단·장애인용 승강기·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.3미터 전면, 선형블록이 시각·교차·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,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